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90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골드리치컨설팅대부㈜

2. 조치내용

○ 소재지 불명 대부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1. 대부업자의 소재지 불명

○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대부업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재 확인을 위한 공고를 하고 그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그 대부업자로부터 통지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됨에도

- 골드리치컨설팅대부㈜는 연락두절 등으로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* 소재 확인을 위한 관보 공고(2025.8.18.,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-582호)를 하였으나 공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소재지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 등록된 소재지 현장 방문을 통해 소재 불명 사실을 확인

나. 근거법규

○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제2항
○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조